

(주)머스트자산운용 투자권유준칙

제 정	2013.07.01.
1차개정	2016.10.06.
2차개정	2019.08.22.
3차개정	2020.04.02.
4차개정	2021.06.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제3조 제1호 및 제4조, 제5조, 제13조 제1항, 제18조 및 제21조는 전문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할 때에도 적용한다. (2021.06.15 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대출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에 따라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021.06.15 신설)

②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가.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나.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 (2021.06.15 개정)

④ '취약한 금융소지자'란 고령자(65세 이상), 은퇴자, 주부 등 금융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임직원등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투자자 구분 등

제4조(방문 목적 확인)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 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 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2021.06.15 개정)

제3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 제2항(투자자정보 파악) 및 제3항(적합성원칙)에 따른 의무를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투자자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②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지 2호]의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가.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사용

나. 유의사항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자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만, 설명의무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설명의무가 적용됨 (2021.06.15 신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 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4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1절 투자자정보

제7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성향, 재무상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연령, 금융상품 구매목적, 구매경험 등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스코어링기준표 [표 제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일반투자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그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⑤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를 따른다.

⑥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체결한 금융소비자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의사를 [별지 제1호] ‘일반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이용하여 확인 받아야 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상 강화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의 적용이 배제됨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제1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알린 후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투자자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하여야 한다.(2020.04.02 개정)

제2절 투자권유

제9조(투자권유 절차) ①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별지 1호]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④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된다.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 3호]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특히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가.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부합 상품)을 투자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투자자성향에 부합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큰 손실 위험이 있음을 고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나. 유의사항 :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을 투자하는 등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은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2021.06.15 신설)

⑤ 임직원등은 가)의 투자자에게 나)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적합성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가. 교부대상자 : 신규투자자,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

나. 대상상품 : ELS, ELF, ELT, DLS, DLF, DLT (2021.06.15 개정)

⑥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2021.06.15 신설)

제10조(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①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별지 1호]에 따라 [별표 제1호]의 적합성판단 기준과 [별표 제3호]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2021.06.15 신설)

제11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1)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2)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나)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①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②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③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다) 신탁계약

①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②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3) (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른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가) 기초자산의 종류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나) 선도, 스왑,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마.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사.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아.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자.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차. 투자자의 사전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카. 금소법 제17조를 적용 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타. 관계법령 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2021.06.15 개정)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제3절 설명의무

제12조(설명 의무)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 투자자의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2021.06.15 개정)

④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작성한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나.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다.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2021.06.15 개정)

⑤ 임직원등은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가. 서면교부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2021.06.15 개정)

⑥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5장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제13조(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①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

를 [별표 2호]와 같이 분류하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가.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나.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 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③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측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제6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4조의1(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①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 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가. 서면교부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③ 회사는 제①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회사는 제①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2021.06.15 개정)

제14조의2(청약의 철회) ①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내에 서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방법으로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가.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나. 계약 체결일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 등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등을 발송한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별지 6호]

④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⑤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 ⑥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 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2021.06.15 신설)

제14조의3(위법 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제2항, 제19조(설명 의무)제1항·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계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 기간을 포함한다.)

나.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② 투자자가 제1항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다.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라.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2)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마.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회사는 제2항,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2021.06.15 신설)

제1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 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호 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나.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16조(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 준수사항)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

- 가.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 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 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 라.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 마.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 바.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사.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 아.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자.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 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 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 타.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 파.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 가. 제1항의 각 호의 사항
- 나.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 다.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 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마.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17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래의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가.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 나.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다.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18조(투자일임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 1) 임직원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1호]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파악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 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

(이하 "투자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4) 회사는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임직원등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가.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나.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다.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제19조(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① 금융투자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 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세부내용은 금소법시행령 제26조 참조)를 10년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 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2021.06.15 신설)

부칙(2013.07.01.)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06.)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8.22.)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4.02.)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0년 4월 02일부터 시행한다.(금융투자업규정 변경에 따름)

부칙(2021.06.15.)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금융투자업규정 변경에 따라 전면 개정)

투자정보 확인서[일반금융소비자(개인/법인)]

- 본 확인서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 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 조제 1 항에 따라 따라 고객이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분류	질문	비고
재산상황	월소득 대비 투자가능 자산의 비중 <input type="checkbox"/> 10% 이하, <input type="checkbox"/> 30% 이하, <input type="checkbox"/> 50% 이하, <input type="checkbox"/> 70% 이하, <input type="checkbox"/> 70% 초과	1점 ~ 5점
	여유자금 보유여부 <input type="checkbox"/> 6개월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6개월분~12개월분, <input type="checkbox"/> 12개월분~24개월분 <input type="checkbox"/> 24개월분 초과	1점 ~ 4점
	총 자산규모(순자산, 개인) <input type="checkbox"/> 3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5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8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1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10억 초과	1점 ~ 5점
	총 자산규모(순자산, 법인) <input type="checkbox"/> 적자상태, <input type="checkbox"/> 1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3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5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50억 초과	1점 ~ 5점
	총 자산대비 금융상품 비중 <input type="checkbox"/> 10% 이하, <input type="checkbox"/> 20% 이하, <input type="checkbox"/> 40% 이하, <input type="checkbox"/> 60% 이하, <input type="checkbox"/> 60% 초과	1점 ~ 5점
투자경험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복수선택가능) <input type="checkbox"/> 주식, <input type="checkbox"/> ELW, <input type="checkbox"/> 신용거래, <input type="checkbox"/> 외화증권 <input type="checkbox"/> 선물옵션, <input type="checkbox"/> 채권, <input type="checkbox"/> 주식형펀드 <input type="checkbox"/> 채권/혼합형펀드, <input type="checkbox"/> 해외펀드, <input type="checkbox"/> 투자자문·일임, <input type="checkbox"/> 신탁, <input type="checkbox"/> 기타 []	5개 미만 1점 5개 이상 10개 미만 2점 10개 이상 3점

	<p>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복수선택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등 <input type="checkbox"/>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p>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전혀 없음 <input type="checkbox"/>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5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5년 이상 <p>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투자기간 (개월) 	<p>1점 ~ 5점</p> <p>12개월 미만 1점 12개월 ~ 24개월 미만 2점 24개월 이상 3점</p>
<p>금융 전문인력 보유 여부 (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변호사(명), <input type="checkbox"/> 회계사(명) <input type="checkbox"/> 금융전문인력 또는 금융회사 근무 경력자 (명) 	<p>1인당 2점</p>
<p>투자목적 (거래목적)</p>	<p>투자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 <input type="checkbox"/>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input type="checkbox"/> 시장(예: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input type="checkbox"/> 채권이자·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input type="checkbox"/>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 ※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손실위험도 커짐 <p>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투자 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 <input type="checkbox"/> 원금 보존을 고려하나 투자 수익이 더 중요 <input type="checkbox"/>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이 중요 	<p>5점 ~ 1점</p> <p>1점 ~ 3점</p>
<p>금융지식 수준/이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input type="checkbox"/>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p>1점 ~ 3점</p>

<p>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p>	<p>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p> <p><input type="checkbox"/>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함</p> <p><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음</p> <p><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음</p> <p><input type="checkbox"/>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p>	<p>1점 ~ 4점</p>
<p>투자하는 자금의 투자 예정기간 (계약기간)</p>	<p>손실 발생시 원금회복을 위해 감내할 수 있는 기간</p> <p><input type="checkbox"/> 0~6개월</p> <p><input type="checkbox"/> 6개월~1년</p> <p><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p> <p><input type="checkbox"/> 6개월 미만</p> <p><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 1년 미만</p> <p><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 2년 미만</p> <p><input type="checkbox"/> 2년 이상</p>	<p>1점 ~ 3점</p> <p>1점 ~ 4점</p>
<p>연령</p> <p>취약투자자 여부</p>	<p><input type="checkbox"/> 19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20세~30세</p> <p><input type="checkbox"/> 30세~40세 <input type="checkbox"/> 40세~50세</p> <p><input type="checkbox"/> 50세 이상</p> <p>취약투자자 해당 여부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p> <p>- 고령투자자</p> <p>- 미성년자</p> <p>- 정상적 판단에 장애가 있는 투자자</p> <p>- 금융투자상품 투자 무경험자</p> <p>- 문맹자 등</p>	<p>19세 이하 : 0점</p> <p>20세~30세 : 1점</p> <p>30세~50세 : 2점</p> <p>50세 이상 : 1점</p> <p>Yes : 0점</p> <p>No : 1점</p>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투자 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1.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7 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 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투자자 확인 사항

상기 기재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권유 여부를 결정하신 경우 아래 각 항목의 해당사항에 체크한 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권유 희망 여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2.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투자자정보를 제공함)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일임·(비지정형)신탁계약 및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 거래 희망 시에는 체크불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적합성 보고서

고객성명 :	고객관리 번호 :
■ 투자정보 확인서 조사결과	
1. 고객연령대:	2. 투자예정기간:
※ 기타	
■ 고객의 투자성향 및 투자권유 상품	
투자성향	
투자권유 상품	
■ 투자권유 사유 및 핵심 유의사항	
투자권유 사유	
핵심 유의사항	
■ 참고사항	
○ 본 자료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및 투자관련 요구사항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므로, 상이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유의사항은 해당 상품의 특성 또는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유의가 필요한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 일반적인 위험내용 등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성명 :	
년 월 일	

적정성 판단 보고서

고객성명 :	고객관리 번호 :
■ 고객정보 확인결과	
고객 정보	
고객 연령 :	
투자 기간 :	
해당 금투상품 이해도 :	
기대이익 및 손실감내 수준 :	
보유자산 등 :	
위험에 대한 태도 :	
과거 상품 취득 경험 등 :	
■ 적정성 판단 결과 및 이유	
총 합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사 유	
■ 참고 사항	
○ 동 보고서는 금소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이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회사가 고객에게 알리는 경우에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적정성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동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고객의 성명 :	서명/인

청약 철회 요청서

■ 고객 정보

고객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청약 철회 대상

- (투자성 상품) 고객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 아래 1) 또는 2)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고객과 회사간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이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객이 예탁한 금전 등을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약철회 대상 상품 :	<input type="checkbox"/> 투자성 상품 :
1) 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년 월 일
2) 계약 체결일 : (금소법령에 따라 계약서류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년 월 일

■ 주의 사항

-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 고객은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그 발송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인)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

■ 고객 정보	
고객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계약해지 대상 상품명 :	
계약체결일 :	
계약해지 사유 :	<input type="checkbox"/>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input type="checkbox"/>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input type="checkbox"/>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input type="checkbox"/>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input type="checkbox"/> 부당권유금지 위반(금소법 §21)
■ 계약해지 사유의 근거	
증빙자료[첨부 목록]	
참고자료 [첨부 목록]	
■ 안내 사항	
○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와 체결한 위법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위법계약 해지 요구 관련 통지서

▣ 통지 대상 고객

고객명 :	생년월일 :
주 소:	

▣ 회사의 통지 결과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	<input type="checkbox"/>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input type="checkbox"/>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input type="checkbox"/>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input type="checkbox"/>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input type="checkbox"/> 부당권유금지 위반(금소법 §21)
회사의 판단 결과 :	<input type="checkbox"/>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수락 <input type="checkbox"/>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거절
(거절시) 회사의 정당한 사유:	※ 구체적으로 사유
(거절시) 정당한 사유의 객관적·합리적 근거	※ (설명 의무 위반시, 위반이 없다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 안내 사항

○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머스트자산운용

[별표 1 호]

투자정보 확인서 점수화 안내

투자권유준칙 [별지 1 호] 기준에 따라 투자자의 답변을 점수화하고, 이 점수들의 총합을 해당 투자자의 투자성향으로 확정 후, 파악된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투자권유 가능한 상품군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투자권유준칙 [별지 1 호]의 투자자 정보 항목 1 ~ 17 항목에서 투자자가 체크한 내용을 기초로 회사가 점수화 하고, 총합 점수를 기준으로 투자자 성향을 분류하게 됩니다.

※ 항목점수 최저 14 점 ~ 최고 57 점, 회사 정성평가 3 점, 총점 60 점

■ 투자자 성향 분류

총점 범위	집합투자상품 투자자유형	투자일임계약 투자자유형
55점 이상 60점 이하	공격투자형	고위험
45점 이상 55점 미만		중위험
35점 이상 45점 미만	적극투자형	위험
30점 이상 35점 미만		주의
25점 이상 30점 미만	위험중립형	
20점 이상 25점 미만	안정추구형	
20점 미만	안정형	

■ 투자자 성향별로 적합한 투자권유 대상 집합투자증권 등급

구분	매우높은 위험(1등급)	높은위험 (2등급)	다소높은 위험(3등급)	보통위험 (4등급)	낮은위험 (5등급)	매우낮은 위험(6등급)
투자상품	국내외 주식, 파생상품	국내외 주식	국내주식	채권혼합	불가	불가
안정형	-	-	-	-	-	-
안정추구형	-	-	-	가능	-	-
위험중립형	-	-	가능	가능	-	-
적극투자형	-	가능	가능	가능	-	-
공격투자형	가능	가능	가능	가능	-	-

■ 투자일임계약 위험도 분류 기준

위험도	상품	내용
고위험	주식 1형	선물/옵션, 압축 포트폴리오(15종목 이하)
	글로벌형	해외 선물/옵션, 해외주식 및 해외재간접기구, 장외 파생상품
중위험	주식2형	압축 포트폴리오(15종목 이하)
위험	주식3형	Active형(15종목 초과 및 KOSDAQ 15% 이상 가능)
주의	주식4형	Active형(15종목 초과 및 KOSDAQ 15% 미만)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

등급	국내투자 신규펀드 등급 분류기준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 등급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 등급 (보통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 등급 (낮은 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 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주1)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머스트자산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2)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국내·외 부동산, 상품(Commodity), 리츠,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지분(유한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부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이러한 고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 주3) 투기등급채권 등이란 투기등급채권(BB+ 이하), 투기등급 CP(B+이하), 이러한 투기등급채권 등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 주4) "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등급 이상), CP(A3 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투자원금에 대해 정부의 신용보강이 있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 이러한 중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 주5) "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자산, 이러한 "저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 주6) 편입비용, 최대손실가능비용 등은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운용계획서 등을 기초로 하되, 실제 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7)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를 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는 1 등급씩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채권의 경우 국제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

정될 수 있습니다.

- 주8) 모자형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하여 분류합니다.
- 주9)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 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주10) 파생상품의 편입비는 위험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11) 파생상품 또는 증권의 차입 등을 통하여 위험노출 수준을 집합투자재산 순자산의 1 배수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레버리지형 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 수준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주12) 특정지수를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의 경우 특정지수에 포함되는 종목수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주13)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의 경우 담보의 종류 및 담보비율, 보증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주14)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방법에 따라 별도로 분류합니다. 상기 분류에 따른 동일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편입자산의 구체적인 운용내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위험등급을 달리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회사가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고령투자자 보호 필요성) 고령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쇠약과 더불어 기억력과 이해력이 저하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할 필요성이 있는점, 대부분의 고령투자자들이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잔여 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아울러, 최근 금융투자상품이 구조화·첨단화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제 3 조 (고령투자자의 정의) 회사는 65 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정의하고, 그 중 80 세 이상은 보다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는 초고령투자자로 정의한다.

제 4 조 (고령투자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① 회사는 고령투자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령투자자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② 회사는 고령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하는 본사 내 전담부서 및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③ 회사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지정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한다.

④ 회사는 임직원이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관리직 직원, 준법감시담당자 등이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리직 직원은 고객과의 직접적 면담(투자권유시 배석 등) 또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이해여부 및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 확인하고 확인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⑥ 관리직 직원이 사전 확인한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하여야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회사가 투자권유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신상품 개발시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설명서,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한다.

⑧ 회사는 다른 회사가 개발한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을 살펴보고,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⑨ 회사는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 5 조 (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① 회사는 고령투자자 응대방법 및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등을 담은 내규를 제정해야 하며, 회사는 임직원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교육을 통해 내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 등을 통해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
- ③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령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 ④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 6 조(초고령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①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 ②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상품으로 설명서 또는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된 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없고, 임직원의 투자권유가 없는데도 고객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설명하는 등 판매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 ③ 회사는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가족 등에게 투자사실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등을 대신하여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여 초고령투자자를 조력할 수 있고, 초고령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피콜 등을 통해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제 7 조(상담내용 등의 기록·유지) 회사는 향후 분쟁 등에 대비 고령투자자와의 상담내용 등을 녹음·녹화하거나 판매직원 또는 관리직 직원이 기록·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